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32호 2024. 3. 4.(월)

【훈 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34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1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37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379호(2023년고향사랑기부금접수·운영현황) 1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380호(2024년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신청 공고) 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38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38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2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4-18호(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3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4-19호(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

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43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1. 제안이유 ○ 공무원의 업무수행 출장 시 한정된 수량의 관용 차량 배차 어려움 해소 ○ 운전면허 및 개인차량 미소지자 등 보험 미적용 (만 26세 미만) 직원에게 출장 편의 제공 필요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제4조) ○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6조) ○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제7조) ○ 이용요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제8조) ○ 이용요금의 자기부담에에 관한 사항(제9조) ○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제1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4. 3.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훈령 제 34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출장 수행 시 직원의 신속한 업무수행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운영하는 업무용 택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용 택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이 공무원상 필요한 출장 수행 시 이용하는 택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형택시를 말한다.
2. “운송 플랫폼 앱”이란 이용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무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고 업무용 택시 총괄 법인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의 플랫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용 택시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총무과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직원으로서 여비 지급대상 중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5. “근무시간”이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말한다.
6. “근무지 내”란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출장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구 소속 직원에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이용원칙) ① 업무용 택시는 공무상 출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내 이동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② 업무용 택시는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결제시간이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용 택시 이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때는 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이용절차) ① 회원가입을 위해 각 부서 담당자는 총괄부서의 담당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각 부서 담당자는 운송 플랫폼 앱에 직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는 운송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한다.

③ 이용자는 출장 후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의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용 택시 제도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용 택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용 택시 이용 현황을 관리·점검해야 한다.

제7조(여비) 업무용 택시를 이용한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며,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이용요금의 정산)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해당 월의 이용요금을 다음 달 23일까지 정산하여 업무용 택시 결제 전용 계좌로 지불해야 한다.

② 이용요금 정산 관리자는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각 부서의 담당자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의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을 총괄 부서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이용요금의 자기부담) 각 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자기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의 소속 부서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용 택시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업무용 택시 이용관리대장(○○과)

연 번	이용 일시	행 선 지		용무	이용 요금	출장자		동승자		사전 협의 여부 (O, X)
		출발	도착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문구 및 기타용어 정비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 변경으로 개발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문구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소: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전화: 032-749-7852, FAX: 032-749-7849
- E-mail: hubkey@korea.kr
- 연수구청홈페이지: <http://www.yeonsu.go.kr/>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붙임1】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를 ““폐기물처리시설”이
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30만 제
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후단 중 “1년 범위내에서 4회”를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
업시행 기간 중 5회”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영 제4조제7항”을 “영 제4조제9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u>	제2조(정의) -----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삭 제>
2. “최대 변동계수”란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에 최대발생량의 비율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30만 제곱미터 ----- ----- 해당 ----- ----- ----- -----

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규모 :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년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당해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년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삭 제>

의 전량에 최대 변동계수를
공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최
대 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
되는 부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 된 규모
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
는 부지면적을 공한 면적.

다만, “소

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
지면적”이란 가연성 폐기
물 1톤을 소각처리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
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
다. 이 경우 1

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음식물류폐
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
되는 부지면적

<삭 제>

을 곱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
상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에 아
래 각 목의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설치부지가 확정된 경우
에는 소요면적에 대한 감
정평가 금액. 이 경우 감정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
다.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
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등
대지 조성원가

다. 부지매입이 진행중인 경
우는 매입에 소요되는 실
제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
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 영 제4
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1일 처리 능력 200톤 규모
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

<삭 제>

<삭 제>

가에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단가비용”은 구청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사료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톤당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영 제4조제7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

제7조(세출) -----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조제9항-----

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 -----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u>당해</u>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이월) ----- ----- <u>해당</u> ----- ----- ----- --.

'23년고향사랑기부금접수 · 운용현황

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기금사용명세서

1. 지방자치단체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2. 모금기간: 2023.1.1. ~ 12.31.

3. 접수건수및금액(단위:건, 백만원)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		비고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1,040건	97.1	1,040건	97.1	2023년 시행

4. 답례품제공현황(단위:건, 백만원)

제공건수	제공금액	비고
850	25	

5. 기금사용내역(단위:백만원)

사용항목	세부사업별	금액	비고
	해 당 없 음 (전액 예치)		

6. 기금수입및지출현황(단위:백만원)

수입		지출		잔액(보유액)	비고
합 계		합계		97.1	
모 금 액	97.1	기금사업	-		
당 해 년 도	97.1				
전 년 도	-	운영경비	-		
이 자 수 입					

2024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의 내용올매년 2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기부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공개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한 방법 외의 모금을 강요, 권유·독려해서는 아니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160g/㎡)

□ 고향사랑기부금의접수현황

① 기부금접수총괄현황(단위:건,백만원)

건수	금액	비고
1,040	97.1	

② 기부금액별현황(단위:건,백만원)

총계		10만원미만		10만원		10만원초과~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00만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40	97.1	89	2	951	95.1	-	-	-	-	-	

③ 월별기부현황 (금액:건,명,백만원)

월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계	1,040	100%	97.1	100%
1월	36	3%	3.2	3%
2월	26	3%	2.3	2%
3월	53	5%	4.3	4%
4월	30	3%	2.7	3%
5월	34	3%	2.7	3%
6월	9	1%	0.4	1%
7월	13	1%	1	1%
8월	19	2%	1.7	2%
9월	32	3%	2.8	3%
10월	30	3%	2.6	3%
11월	95	9%	9	9%
12월	663	64%	64.4	66%

□ 답례품의제공현황및비용지출

① 답례품제공총괄현황(단위:건,천원)

제공건수	제공금액	비고
850	25,072	

② 인기답례품현황(최대상위15개)(단위:건,천원)

순위	품목명	제공건수	제공금액	비고
1	연수e음	634	18,870	
2	셀레브르(커피)	96	2,880	
3	딸기씨네 수제청	62	1,860	
4	농가식품	34	754	
5	녹청자	18	540	
6	더카페쿠키	6	168	

「2024년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우리 구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으로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접수기간 : 2024.3.4.(월) ~ 2024.3.15.(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접수 불가)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 지원 제외 대상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 신청내용 :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 지원대상 :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
-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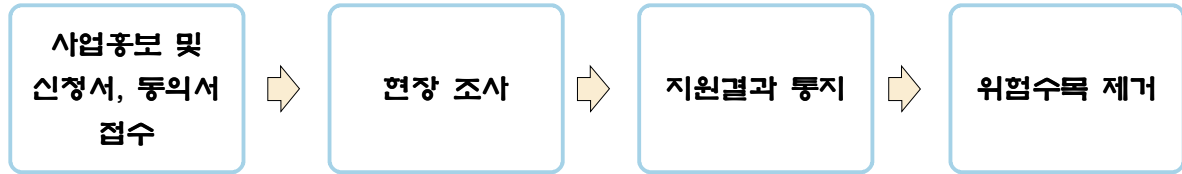
-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가지치기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신청 및 소유주·세대원 동의서 미확보 대상지는 제외됨
-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목처리 중 민원 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예산 범위에 따라 신청 접수 후 지원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동의서 등)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제출

○ 접 수 처 : 연수구청 4층 공원녹지과

○ 선정결과 : 현장조사 및 서류 확인 후 신청자 문자 혹은 유선통보

▶ 추진절차



- 접수된 수목 현장조사 확인 (위험도에 따라 심(深)·중(中)·경(輕) 으로 구분)
- 위험도가 높은 수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보예산 범위 내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문의 :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최용락 주무관 (☎032-749-8694)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반영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 운영 근거 마련

-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 동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 운영 협조

- 관련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와 중복되는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조항 삭제

○ 그밖의 사항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문 조정, 한자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연수구 자치행정과 (☎749-7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749-7224, FAX 749-7219
- E - mail : seol113@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를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를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동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동장은 그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원활동가로”를 “자원활동가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을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2로 정한다”를 “별표 2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민자치회장”을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주민자치회장”을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요율

(제10조제5항 관련)

구분	감면비율	감면 대상	비고
시설물 사용료	전액 면제	-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동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공연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수강료 감면은 연수구 주민에 한함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주민자치회”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 --.
제5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7조(운영) ① (생략)
② 동장은 소속공무원, 자원활동가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③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제1항제1호 -----.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동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동장은 그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자원활동가 등으로 -----.

③ -----.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생략)

2.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3. ~ 6. (생략)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0명 -----
-----.

제10조(사용료 등) ① -----

--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15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주민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

----- 별표 2와 같다.

⑥ -----

----- 20
일 이내 -----

-----.

⑦ -----

----- 주민자치회의 장 -----
-----.

제15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의 장-----

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 -----. ⑤ (현행과 같음)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이용료 징수기준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상 효율을 극대화 하고 연수구민이 관내 시설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용료 징수기준 : 제6조제1항의 [별표]이용료 징수기준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3. 2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참조 : 여성
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6층 여성아동과
- 연 락 처 : 전화 032-749-6741, FAX 032-749-6739
- E - mail : romyone@korea.kr

마.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징수 기준(제6조제1항 관련)

이용구분		이용료	비 고
관내	어린이	9,000원	• 이용시간 기준: 2시간 -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동반 보호자	1,000원	
관외	어린이	11,000원	
	동반 보호자	1,000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4-18호

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 3.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할 수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1. 위 치(붙임1 참조) : 연수구 청학동 ① ~ ⑮ 구역(면적 범위) 내

- ① : 청학동 475 일원(함박외로 10)
- ② : 청학동 477-1 일원(용담로50번길 28)
- ③ : 청학동 477-4 일원(함박외로4번길 17)
- ④ : 청학동 475-5 일원(함박외로4번길 1)
- ⑤ : 청학동 483 일원(청능대로53번길 24-4)
- ⑥ : 청학동 484-1 일원(용담로76번길 8-1)
- ⑦ : 청학동 484-4 일원(청명로3번길 16)

- ⑧ : 청학동 486-4 일원(청명로3번길 3)
- ⑨ : 청학동 483-8 일원(청능대로53번길 6)
- ⑩ : 청학동 491 일원(용담로63번길 26)
- ⑪ : 청학동 496 일원(청명로 34)
- ⑫ : 청학동 497-8 일원(청명로 16)
- ⑬ : 청학동 493-1 일원(청명로31번길 9)
- ⑭ : 청학동 492-8 일원(청명로17번길 10-3)
- ⑮ : 청학동 491-8 일원(청명로17번길 30)

1-2. 위 치(붙임2 참조) : 연수구 청학동 ① ~ ⑫ 구역(면적 범위) 내

- ① : 청학동 524-1 (청학로11번길 33)
- ② : 청학동 528-9 (청학로 10)
- ③ : 청학동 527-1 (청학로 4)
- ④ : 청학동 63-2 (청솔로 11)

2.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붙임1, 붙임2 참조】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4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도로의 굽은 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건물 3면이 접하는 3곡각의 경우 각 면에 표시 가능)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의료시설 및 약국에 한해 1면의 면적이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의 경우 세로 150cm 이하, 지름 30cm 이하의 규격으로 싸인볼을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및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② 광고물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상징 도형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을 사용한다.
- ⑤ 광고물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은 설치와 변경 또는 제거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거할 때
흔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층에 설치하는 간판은 판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폭의 이내, 세로크기는 1.0m 이내, 채널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한다.
- ②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은 바 형태의 입체형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 폭의 80%이내, 세로크기 30cm이내, 채널의 크기는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건물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채널 세로크기 계산식) $55\text{cm} + (\text{해당 층수} - 1) \times 5\text{cm} \text{ 이내}$
--

- ③ 상징도형의 경우에는 주요 표시내용 문자의 120% 이하로 한다.
- ④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한다.
- ⑤ 아크릴 박스는 가로 40cm 이내, 세로 1m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간판 양 끝 단으로 하며 하나의 간판에 최대 2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고, 간판의 바깥쪽 끝 부분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한다.
- ②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 0.36m^2 이내의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 두께를 0.2m 이하로 한다.
- ③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원칙적으로 지주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나 건물 면이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져 돌출간판 설치가 무의미한 건물의 경우 연립형 또는 단독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4m 미만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 ③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이 0.36m^2 이하로 한다.

제10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점멸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배선, 컨버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 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건물주(소유주) 등은 건축물(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고시 구역임을 명시하여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할 경우 연수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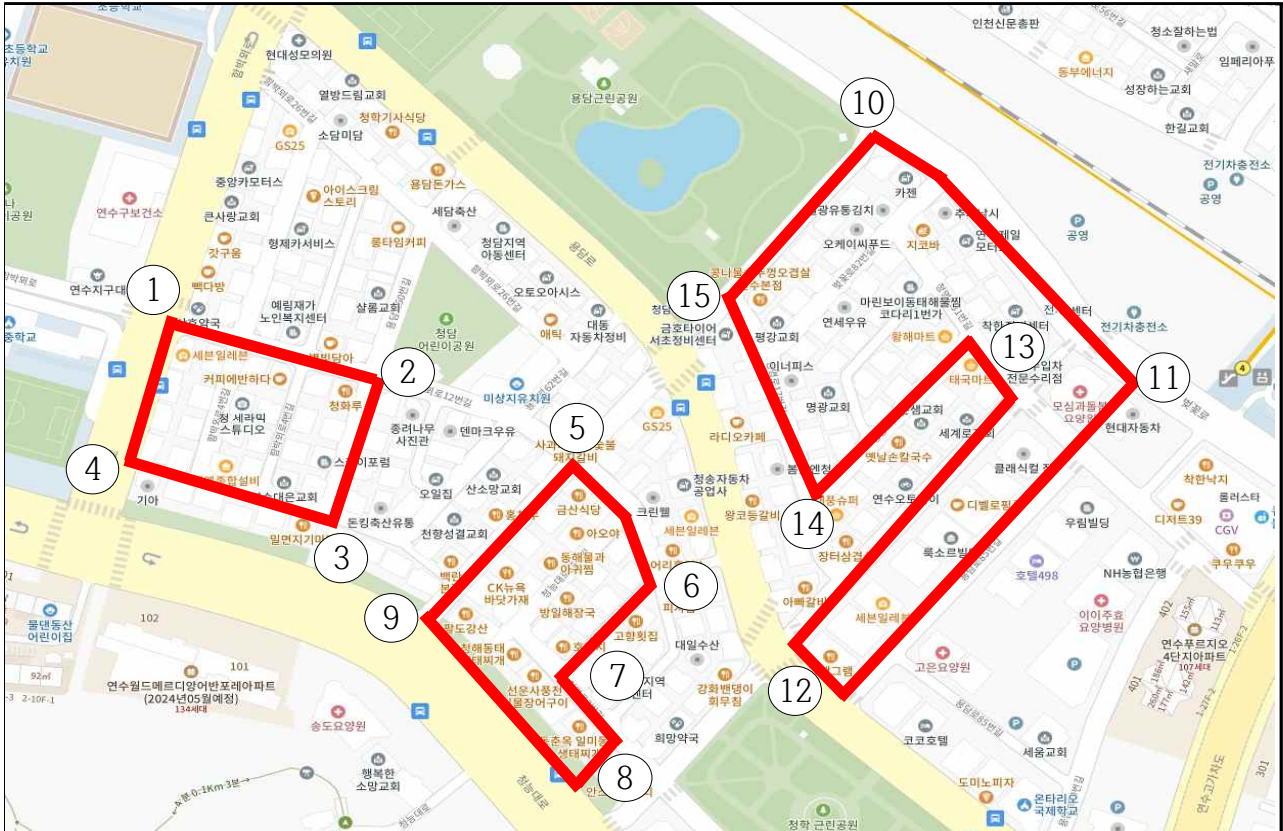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청학동507번지 일원)

○ 위치도



청학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붙임2】

정비구역 지정현황(청학동524번지 일원)

○ 위치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4-19호

연수2동 상가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4. 3. 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완화할 수 있는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연수구 연수2동 ① ~ ④ 구역(면적 범위) 내

- ① : 연수동 606 일원 (용담로 128)
- ② : 연수동 625-6 일원(용담로 148)
- ③ : 연수동 631-6 일원(샘말로 8번길 20)
- ④ : 연수동 600 일원(청능대로113번길 4)

2. 구 역 : 별도 도면 표기 구역【붙임1】

제3조(표시방법의 강화 또는 완화 내용)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4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판의 총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은 벽면이용간판 1개와 돌출간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도로의 굽은 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가 2개 이상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거나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간판 1개를 추가(건물 3면이 접하는 3곡각의 경우 각 면에 표시 가능)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의료시설 및 약국에 한해 1면의 면적이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80cm 이내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의 경우 세로 150cm 이하, 지름 30cm 이하의 규격으로 싸인볼을 추가 설치 가능하다.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등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및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 ② 광고물의 주표기 내용은 업소명이나 브랜드명 또는 상징 도형으로 제한하고, 보조표기 내용에는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③ 광고물 등의 색채는 원색계열 색상의 과다한 사용을 금지하며, 주변의 다른 광고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을 사용한다.

⑤ 광고물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은 설치와 변경 또는 제거가 쉽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제거할 때 흔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벽면이용간판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1층에 설치하는 간판은 판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폭의 이내, 세로크기는 1.0m 이내, 채널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한다.
- ②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은 바 형태의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당해 점포 폭의 80%이내, 세로크기 30cm이내, 채널의 크기는 아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크기 이내로 한다.

(건물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채널 세로크기 계산식) $55\text{cm} + (\text{해당 층수} - 1) \times 5\text{cm} \text{ 이내}$
--

- ③ 상징도형의 경우에는 주요 표시내용 문자의 120% 이하로 한다.
- ④ 간판의 돌출 폭은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한다.
- ⑤ 아크릴 박스는 가로 40cm 이내, 세로 1m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간판 양 끝 단으로 하며 하나의 간판에 최대 2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간판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고, 간판의 바깥쪽 끝 부분은 벽면

으로부터 80cm 이내로 한다.

- ②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 0.36m^2 이내의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그 두께를 0.2m 이하로 한다.
- ③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원칙적으로 지주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나 건물 면이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져 돌출간판 설치가 무의미한 건물의 경우 연립형 또는 단독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주이용간판은 연립형으로 업소 당 표시면적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4m 미만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연립형 또는 일직선상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각 표시물의 규격을 통일시켜야 한다.
- ③ 간판의 규격은 1면의 면적이 0.36m^2 이하로 한다.

제10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점멸방식의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전기배선, 컨버터 등 전기 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의 특례)

건물의 특성 및 간판의 디자인 상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및 조례 표시방법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 ① 건물주(소유주) 등은 건축물(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고시

구역임을 명시하여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할 경우 연수구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시행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붙임1】

정비구역 지정현황

○ 위치도

